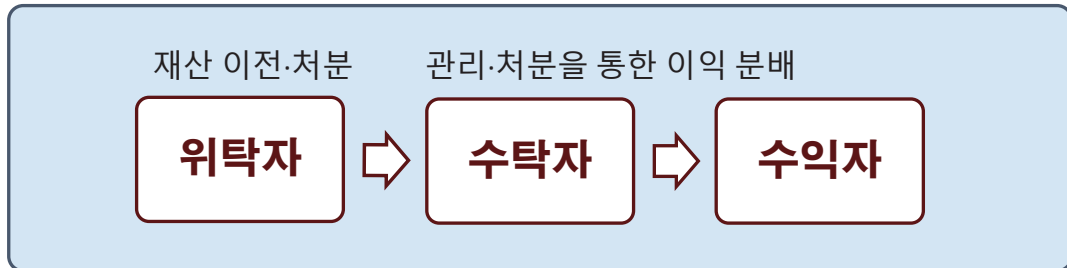


신탁의 주요 특성

■ 신탁의 구조와 핵심

❖ 신탁의 기본구조



❖ 신탁의 핵심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와 **경제상의 소유자**를 분리시키는 것
수탁자는 **보통법상의 권리**인 법률상의 소유권(legal title)을 가지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 title)인 수익권을 가진다

신탁의 주요 특성

■ 신탁의 기원과 신탁법의 역사

영국

상속이나 증여의 일환으로 민사신탁이 발달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상사분야에서 신탁 활용

일본

신탁업자를 규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1922년 신탁법과 신탁업법 제정

미국의 상사신탁을 모델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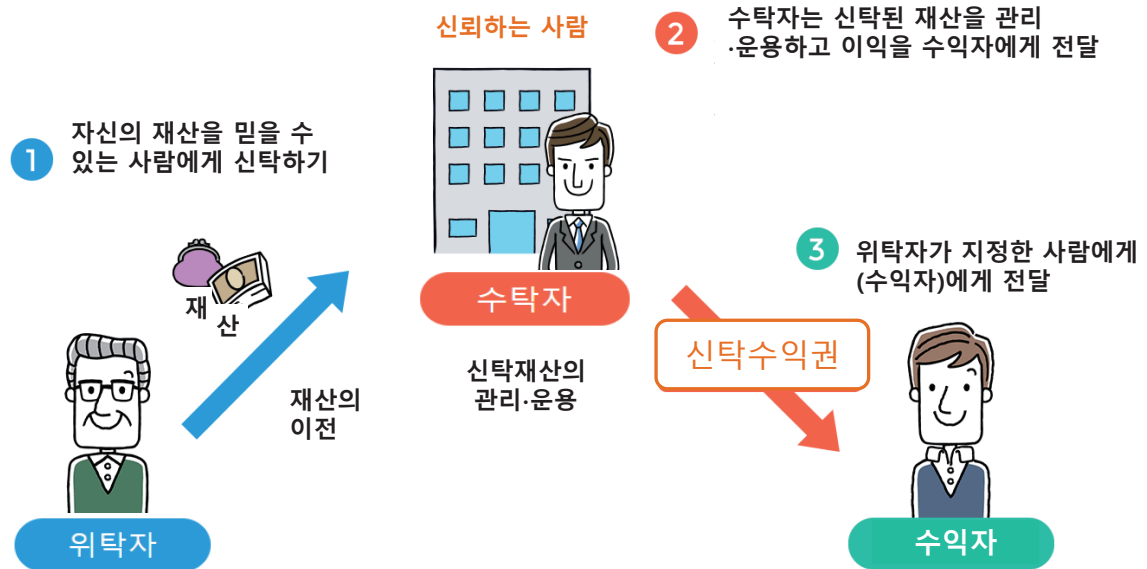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계수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신탁법을 모방

신탁의 주요 특성

■ 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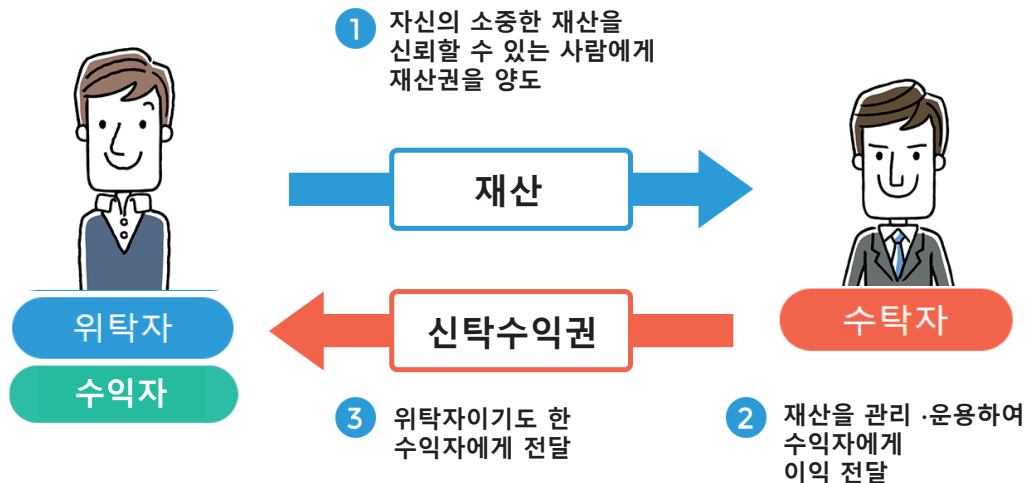
신탁의 주요 특성

■ 신탁 용어

요건	일상 용어	신탁 용어
누가	재산을 가진 자가	위탁자
누구에게	믿을 만한 자에게	수탁자
누구를 위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를 위해	수익자
무엇을	재산을	신탁재산
어떻게	관리, 처분을 위탁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의 주요 특성

■ 자익신탁 VS 타익신탁



신탁의 주요 특성

■ 신탁의 특징

- ① **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되고 수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된다.
- ② **도산격리(insolvency protection)** : 위탁자의 파산재단에도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 ③ **강제집행금지**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수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 ④ **신용위험관리** : 수익자가 위탁자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됨으로써 수익자가 대단히 강력하게 보호된다.

신탁의 주요 특성

■ 자산승계 시 유언제도 와 신탁의 차이점

1 세대간 연속 상속 가능 여부

- **특징**
세대간 연속적인 상속설계 가능
- **차이점**
유언서 : 부모가 사망시 자녀 또는 손자에게 이전
신탁 :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주되, 자녀가
혹시 사망하면 손자에게 연속지정 가능
예) A → B → C

2 상속 후 재산관리의 문제

- **특징**
상속 후 재산관리 가능
- **차이점**
유언서 : 상속 시 상속집행
신탁 : 상속 후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신탁
관리 후 집행 가능
- **어느 분께 권할까요?**
미성년자 등 상속 후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나 Living Trust VS 유언장



동일

상속의 효력

유언서 : 민법
신탁 : 신탁법 59조

3 상속집행의 투명성

- **특징**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속집행 가능
- **차이점**
유언장 : 피상속인 사망 후 집행인의 조율기능 필요
신탁 : 피상속인 사망 시 신탁이 집행인의 역할 수행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신탁의 주요 특성

■ 유언장 vs Living Trust

	유언장	Living Trust
형식	보증인 2인 등 심리적 부담감 높음	금융기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심리적 부담감이 낮음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의 각 방식마다 엄격한 요건 충족 - 미충족시 유언은 무효	- 특별한 방식 없음 - 의사합치만 있으면 유효
수증자 지정	- 한 세대 수증자 지정 가능 - 수증자 선 사망 경우 상속문제 해결 불가 - 여러 세대 걸친 부의 안정적 대물림 어려움	- 여러세대 걸친 수증자 지정 가능 - 부의 안정적 대물림 가능
유언 집행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언서의 효력, 유언집행자의 문제 등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 발생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신탁계약서에 따라 은행의 신속한 상속집행 가능
생전재산 관리	유언서만 작성되어 있을 뿐 재산관리 이루어지지 않음	- 생전부터 관리가능 - 사후 본인 유지대로 관리 및 운용 가능
내용변경	- 유언장 내용 변경 시 보증인 2명 필요 - 신규 유언장 작성 절차 따름	기존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으로 가능
조건 및 기한	- 조건 및 기한부 유증 가능 - 다만 조건 및 기한 성취 시까지 상속재산 관리 어려움	- 손님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건 및 기한 설정 가능 - 조건 및 기한 성취 시까지 은행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므로 안정적 상속재산 보존 가능
효력발생	신분상 내용 + 재산상	재산상 내용에 한 함

신탁의 주요 특성

■ 유연신탁 과 유연대용신탁의 차이점

	유연신탁	유연대용신탁
설정방법	유언으로 설정	신탁계약으로 신탁 설정
설정시기	사후에 설정	생전에 설정(생전신탁)
효력발생시기	사후에 효력발생	생전에 효력발생
유언방식 준수 여부	준수해야	준수할 필요 x
유언법정주의 적용 여부	적용 o	적용 x

신탁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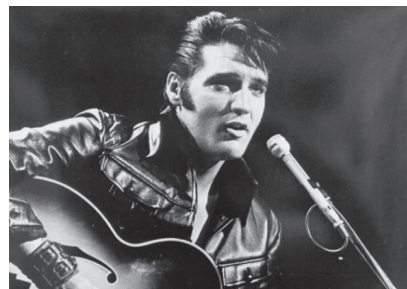
■ 유명인사들도 신탁을 했다



월트 디즈니 (1901~1966)



마이클잭슨 (1958~2009)



엘비스프레슬리 (1935~1977)



스티브잡스 (1955~2011)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FP Conference 2019

Contents

FP Conference 2019

03_연구 결과

- 사회환경 변화
- 신탁의 특성
- 한국의 신탁활용
- 선진신탁(미국,일본) 활용비교

한국의 신탁활용

■ 일반 유형에 따른 상속설계

I	내맘대로 상속방법 설계	▪ 차등승계 플랜 ▪ 유산기부로 내삶의 흔적 남기기 '기부신탁'활용 ▪ 해외거주 상속인들 앞 자산승계 플랜
II	내 노년을 지키는 노후케어	▪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를 위한 플랜 ▪ 내 노후의 자산관리 통제기능 실현
III	사후자산관리	▪ 자녀 & 손자 잇는 명문 자산가의 사후자산관리 플랜
IV	유산정리	▪ 법적 세제관련 절차지원 ▪ 효과적인 상속지원 & 상속이후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V	기업승계플랜	▪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 법적 다툼의 가능성 예방 ▪ 다수 기업 간 사업승계 목적의 차별화 실현

한국의 신탁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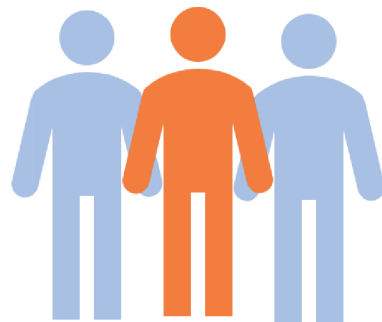
■ 특수 목적에 따른 상속설계

I	장애인 보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장애인신탁'활용
II	미성년 보호	- 학대받은 미성년자녀를 지켜준 신탁활용 - 성년이 되기 전 조부모의 마음 지키는 신탁활용 - 양육비 분쟁방지를 위한 선택 '양육비지원신탁'
III	치매 관리	- 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재산관리의 객관성 & 투명성 확보 '성년후견지원신탁' - 임의후견계약과 결합한 신탁활용
IV	복지사업 자금관리 효율성제고	- 범죄피해자구조금 후견신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국가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재산관리를 위한 '보상금신탁'

3. 연구 결과 _ 후견 &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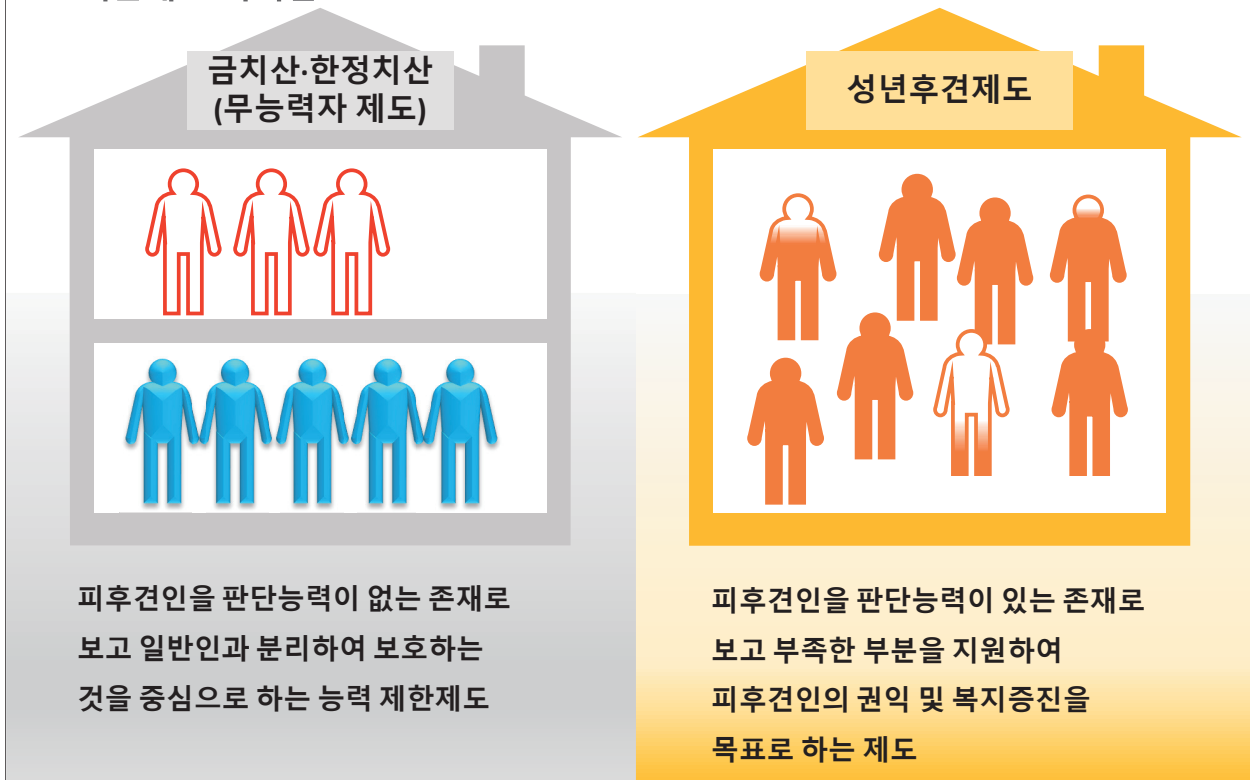
■ 3-1 후견 & 신탁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3. 연구 결과_ 후견 &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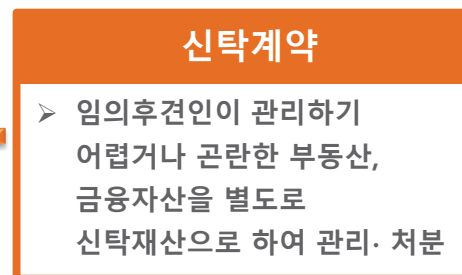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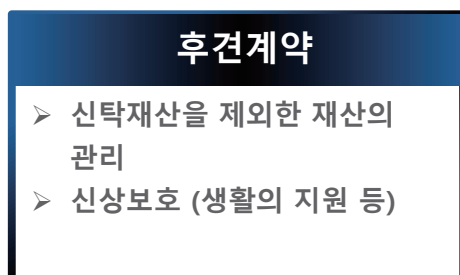
■ 기존제도 차이점



3. 연구 결과_ 후견 & 신탁

■ 임의후견 vs 신탁

성년후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게 신탁을 결합한 자산관리 설계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FP Conference 2019

Contents

FP Conference2019

03_연구 결과

- 사회환경 변화
- 신탁의 특성
- 한국의 신탁활용
- 선진신탁(일본, 미국) 활용비교

선진신탁(일본) 활용 비교

■ 일본의 상속설계

I	유언신탁	▪ 유언장보관 서비스 ▪ 유언집행 서비스
II	노후케어	▪ 안심서포트 신탁 ▪ 노후의 목적형 자산관리 플랜
III	후견제도	▪ 일정재산 이상의 법정후견 지원신탁 ▪ 임의후견과 신탁활용
IV	기업승계	▪ 본인 자녀 손자에 이르는 기업승계 플랜 ▪ 수탁자의 의결권 지원 및 상속업무 지원

선진신탁(일본) 활용 비교

■ 일본의 목적에 따른 상속설계

I	장애인 지원신탁	- 중증장애인 한도 : 6천만엔 - 경증장애인 한도 : 3천만엔
II	교육자금증여신탁	세제혜택 한도 : 1천5백만엔 초과세
III	결혼·육아 지원신탁	세제혜택 한도 : 1천만엔 초과세
IV	생명보험금신탁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및 사후 재산관리

일본신탁 _ 일본은행 시스템 (1)

종류	업태명	근거법
일반은행	시중은행<5행> (메가뱅크3행을 포함)	은행법
	지방은행 <64행>	
	제2지방은행<40행>	
	신탁은행<15행>	
신용금고	신용금고<261행>	신용금고법
신용조합	신용조합<148행>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신탁경영의 근거법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경영 등에 관한 법률	
신탁법	
신탁업법	

-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면허가 필요
- 시중은행은 일본 내 전역에서 점포 개설 실시 하고, 해외에서도 업무를 전개
- 지방은행은 일본 내 특정지역에서 점포를 개설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법령상의 차이는 없음
- 은행 이외에, 회원·조합원용 수신·여신 등을 행하는 신용금고, 신용조합이 있음
(이 외에, 우정은행, 농림어업계 금융기관이 있음)
- 신탁은행은 일반은행이 신탁 업무의 경영 인가를 받은 것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미즈호신탁은행이 대형3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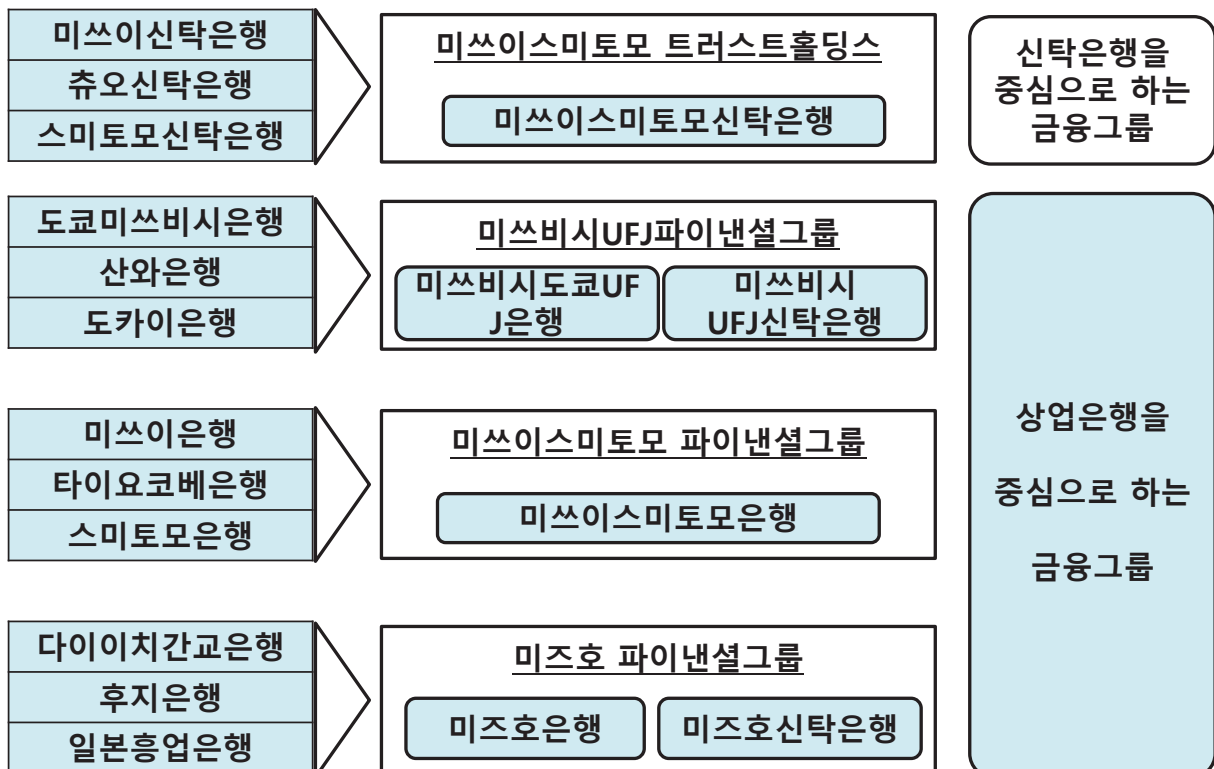
일본신탁 _ 일본은행 시스템 (2)

종류	업체명	예금	대출
일반은행	시중은행 <5행> (메가뱅크3행을 포함)	357조엔	188조엔
	지방은행 <64행>	261조엔	200조엔
	제2지방은행 <40행>	67조엔	52조엔
	신탁은행 <4행>	42조엔	41조엔
	그 중 SMTB	29조엔	28조엔
신용금고	신용금고 <261행>	141조엔	71조엔
신용조합	신용조합 <148행>	7조엔	11조엔

* 전국은행이란 시중은행 5행(미즈호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리소나 ·사이타마리소나), 지방은행 64행, 지방은행Ⅱ(제2지방은행협회 가맹 지방은행)41행, 신탁은행4행(미쓰비시UFJ신탁 ·미즈호신탁 ·미쓰이스미토모신탁 ·노무라신탁), 신세이은행, 아오조라은행의 116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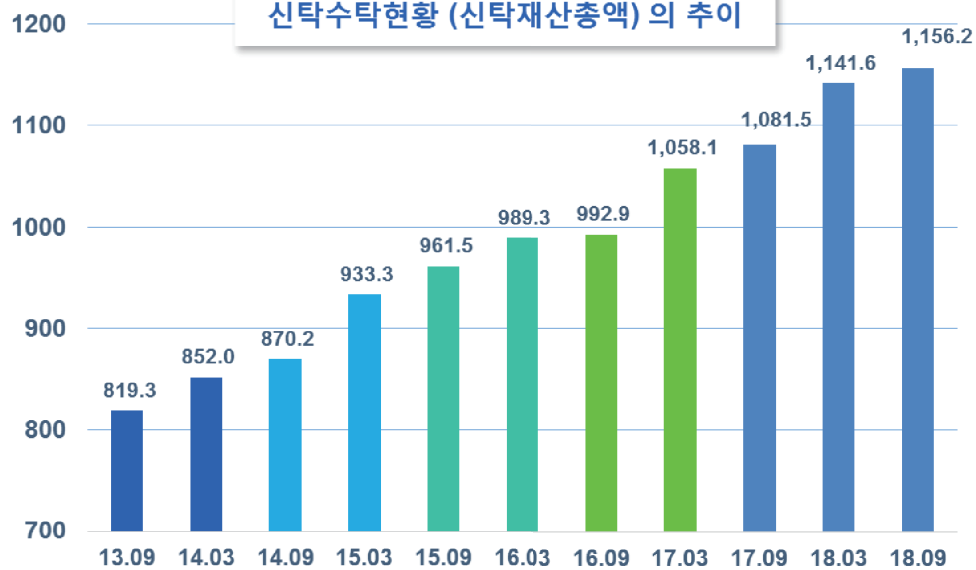
(2018.3.31시점)
(출처: 전국은행협회, 신탁협회
전국신용금고협회
전국신용조합중앙협회)

일본신탁 _ 일본 주요그룹 4개은행



일본신탁 _ 일본신탁 수탁현황

단위 :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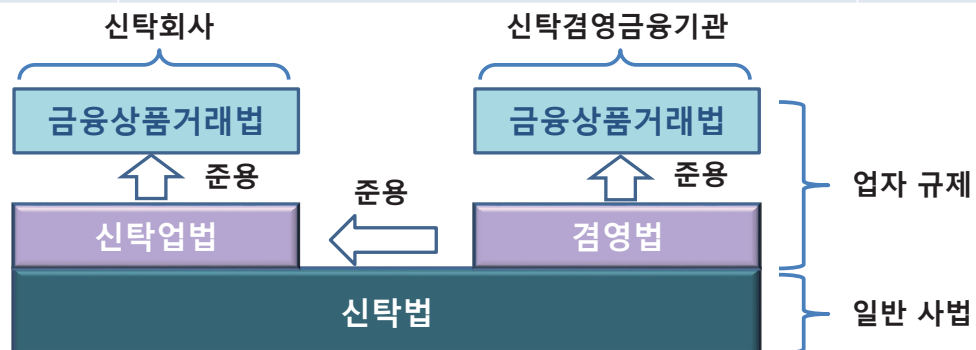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신탁협회

- ❖ 2018년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156조엔으로 일본명목 GDP 546조엔의 약 **2.1**배
- ❖ 2018년 한국의 경우 신탁자산 846조원으로 한국명목GDP 1,655조원의 약 **51%**

일본신탁 _ 일본 신탁법· 신탁업법 구조

법률	개요	소관
신탁법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 법규	법무성
신탁업법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신탁회사 등에 대한 규제 법규	금융청
금융기관의 신탁 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겸영법)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신탁은행 등)에 대한 규제법규	금융청
기타	금융상품 거래법·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대부신탁법·자산유동화법·담보부사채신탁법 등	금융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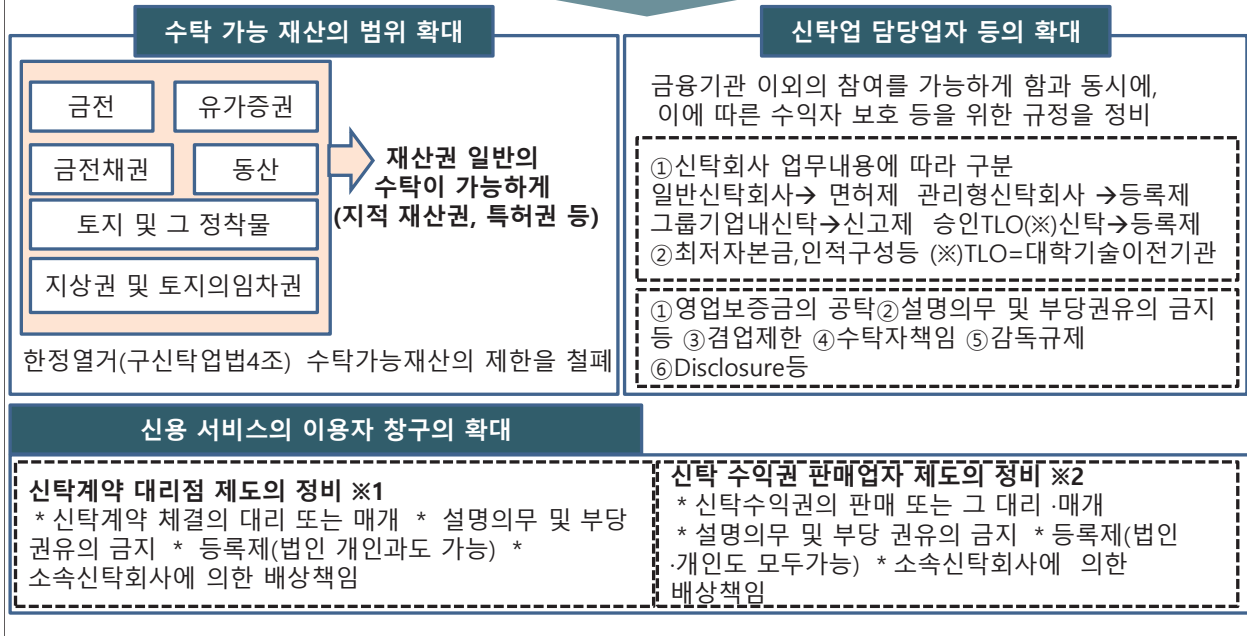


일본신탁 _ 일본 신탁업법 개정

【2004년 신탁업법 개정】 (신탁활용의 현대적 의의)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관리수단으로서 신탁의 활용 니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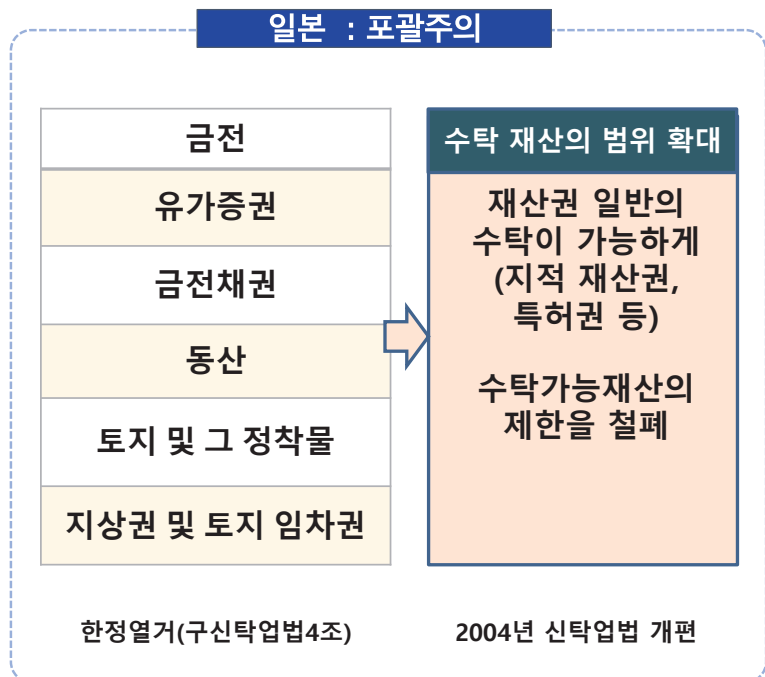
일반 사업회사가 스스로의 노하우를 활용해, 신탁업
담당자로서 많이 이용되는 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싶다는 니즈의 증가



한국과 일본의 신탁활용

■ 재산별 신탁가능 범위 비교

한국 : 열거주의	
금전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동산	
무채 재산권	



일본신탁 _ 2006년 신탁법·신탁업법 개정

【2006년 신탁법 개정】

신탁법 제정 당시에는 상정되어 있지 않았던 형태의 신탁활용의 진전 등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신탁의 이용을 저해하고 있을 우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의 신탁 활용에 대한 기대
--	--	---------------------------------------

수탁자 의무 등의 합리화

신탁법의 현대화

-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 수탁자에 의한 이익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나, 중요사실을 알게 된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의 요건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는 (임의규정) 취지를 명문화(제31조)
-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대(제28조) 또 수탁자로부터 신탁사무 수탁을 받은 제삼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구법에서는 해당 제삼자도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규정이 있다

수익자 권리행사의 실효성·기동성 정비

신탁행위로 정하는 것에 의해 수익자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명문화(제105조) 수탁자가 법령이나 신탁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의 수익자의 금지 청구권의 신설(제44조), 신탁감독인제도의 신설(제131조~)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 창설 등

- (1) 수익증권발행신탁(법 제8장) (2) 유연대용신탁(법 제90조) (3) 수익자 연속신탁(법 제91조)
(4) 자기신탁(제3조 3호)

신탁업법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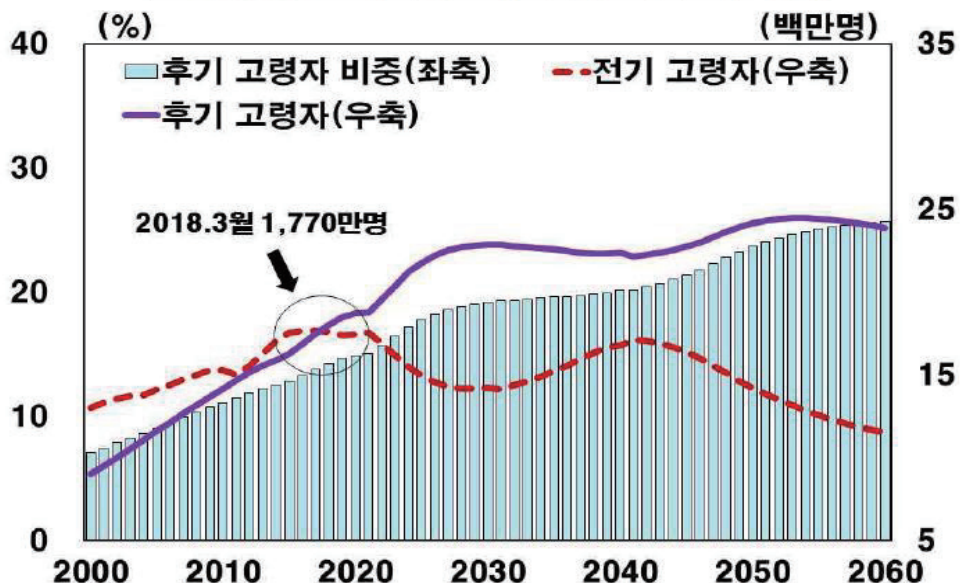
【2006년 신탁업법 개정】

- 업자를 규제하는 신탁업법에 대해서도, 신탁법의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개정을 실시
- 자기신탁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50명 이상)의 수익자를 예정하여 자기신탁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신탁설정시에 제삼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가 신탁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 새로운 신탁상품이 개발 비즈니스 영역 * 비즈니스 차스이 확대 판매네트워크이 확대

일본신탁 _ 일본의 '중고령화' 시대

고령층¹⁾ 인구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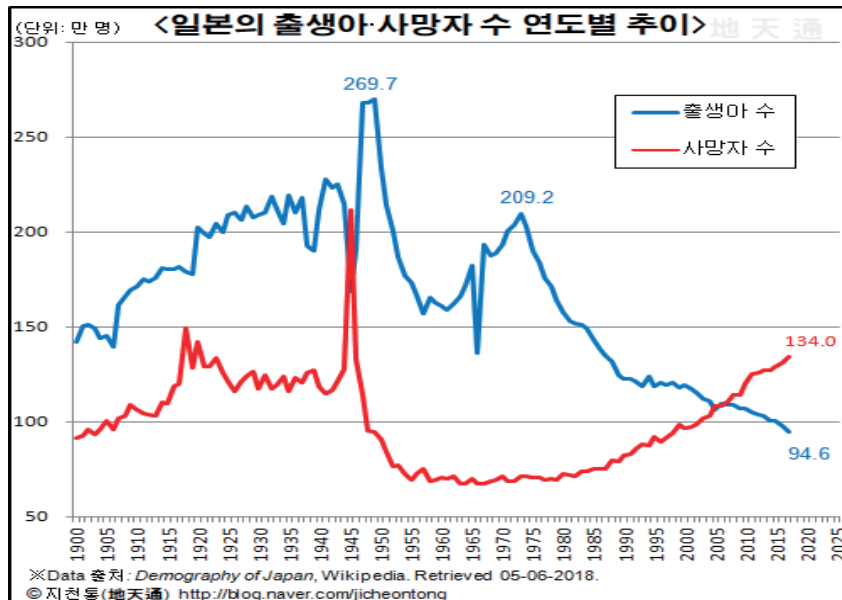


주: 1) 전기(65~74세), 후기(75세 이상)

자료: 총무성 인구추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신탁 _ 사망자 수 후기고령자수 급증

- 2006 초고령화 진입 시기에서 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 하게 됨
- 연간사망자수는 2030년 무렵까지 급속도로 증가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보임
→ 2040년에는 연간 약 170만명



일본신탁 _ 대상속시대 도래

- 인구감소 → 출생수의 감소 : 이것은 긴안목을 보면 자산감소 요인
- 사망자수의 증가 : 보유자산은 차세대로 이어질 뿐,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실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후에도, 가계가 보유하는 현금·예금잔고는 증가 중
- 인구 감소 국면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것은 가계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이동'

도표2 인구와 가계의 현금·예금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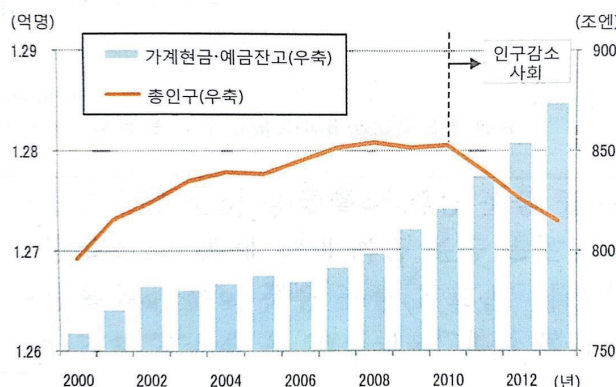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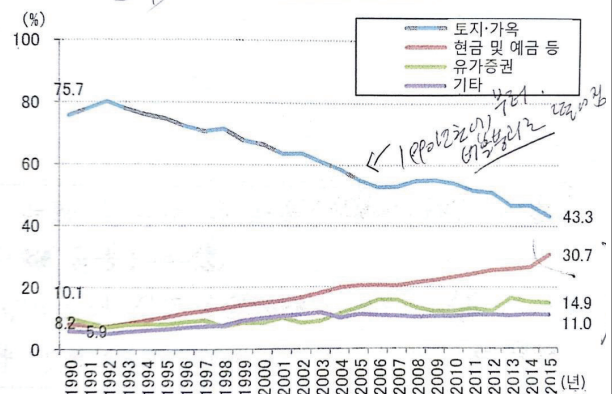


도표3 상속재산의 종류별구성비 추이



일본신탁 _ 가계금융자산의 지역간 이동

- 상속발생에 따른 자산의 유출입이 가장 큰 곳은 도쿄권(유출 약25조엔, 유입약55조엔)
- 유출입을 합하면 상속발생으로 수도권은 약30조엔 오사카지역은 약4조엔의 자산증가 가능성 있음
- 일본전체로는 총 130조엔의 가계금융자산이 상속에 의해 지역을 넘어 이동

도표6 상속 발생에 따른 가계금융자산의 지역간 이동액

단위: 조엔	가계 금융자산	자산 이동처													지역외 합계	유출입 금액
		홋카이도	도호쿠	기타간토	도쿄권	주부· 호쿠리쿠	주쿄권	오사카권	게이한 주변	주쿄권	시코쿠	큐슈	외국			
홋카이도		29.1	25.3	0.4	0.3	2.2	0.1	0.0	0.5	0.1	0.0	0.0	0.0	0.1	3.7	-1.5
도호쿠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아미가타, 후쿠시마	40.2	0.7	29.4	0.1	7.6	0.8	0.6	0.4	0.1	0.0	0.0	0.0	0.4	10.8	-5.9
기타간토	이바라키, 도지마, 군마	38.9	0.1	0.5	28.8	7.9	0.3	0.3	0.1	0.1	0.1	0.0	0.4	0.3	10.0	-4.1
도쿄권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301.7	0.9	2.4	3.8	276.4	4.5	1.8	3.6	0.4	0.9	0.7	3.3	3.1	25.3	29.5
주부· 호쿠리쿠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70.0	0.3	0.7	0.8	10.1	53.4	2.0	1.4	0.1	0.2	0.1	0.2	0.6	16.6	-6.8
주쿄권	기후, 아이치, 미에	81.8	0.1	0.1	0.3	5.4	1.2	70.6	2.2	0.2	0.2	0.0	0.7	1.1	11.2	-3.0
오사카권	교토, 오사카, 효고	114.2	0.0	0.3	0.0	8.4	1.0	1.0	98.7	2.3	1.1	0.1	0.3	1.1	15.5	3.9
게이한 주변	시가, 나라, 와카야마	25.2	0.0	0.0	0.1	0.8	0.4	0.2	3.3	19.4	0.1	0.2	0.5	0.1	5.8	-1.8
주쿄권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아마구치	50.9	0.0	0.2	0.2	4.2	0.6	0.4	3.7	0.3	39.9	0.6	0.9	0.1	11.0	-6.9
시코쿠	도쿠시마,가가와, 에히메, 고치	22.9	0.0	0.0	0.0	1.7	0.4	0.6	1.6	0.3	0.8	17.1	0.3	0.1	5.8	-4.1
큐슈· 오키나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64.4	0.2	0.3	0.3	6.5	0.5	1.5	2.5	0.2	0.8	0.0	51.4	0.4	13.0	-6.3
지역외 합계			2.3	4.9	6.0	54.8	9.8	8.2	19.3	4.0	4.2	1.7	6.6	7.3	129.1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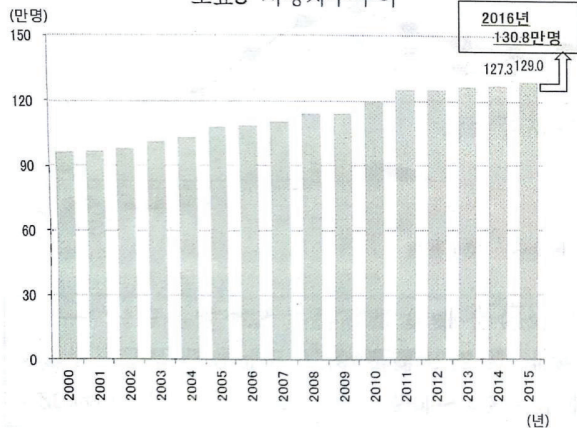
(자료) 후생성「국세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국립사회보장연구문제연구소「인구이동조사」를 근거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이 작성

三井住友信託銀行

일본신탁 _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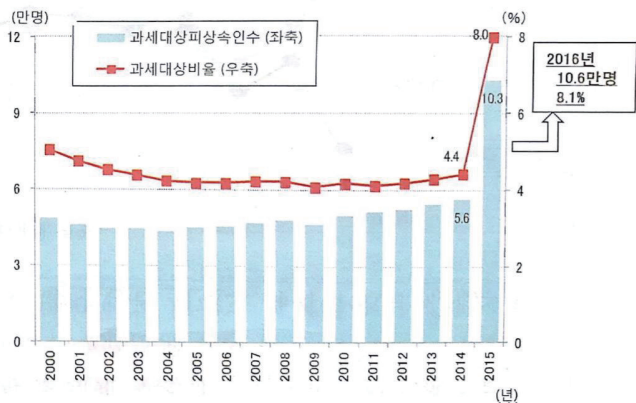
- 2016년의 피상속인수(사망자수)는 130.8만명, 그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0.6만명
- 2014년 (법 개정전)의 피상속인수는 127.3만명, 과세대상은 5.6만명
- 사망자수는 약간 증가했을 뿐이지만, 상속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2배로 증가
- 과세대상비율(과세대상피상속인수 ÷ 피상속인수)은 8.1%로 법개정 전(2015년1월 개정) 4.4%에서 크게 증가함

도표8 사망자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를 근거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작성

도표9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와 과세대상비율의 추이



(자료) 국세청 자료,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를 근거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작성

일본신탁 _ 유언신탁 <생각을 형상화>

❖ 귀하의 생각을 『형상화』 합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 되고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회를 진행하게 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귀하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필요합니다.

❖ 아래와 같은 분께는 유언의 작성을 추천합니다.

-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시키고 싶다
- 노후에 도움을 줄 자녀에게 더 상속시키고 싶다
- 과거 상속의 번거로운 절차를 경험 자기의 자녀에게는 똑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 사업을 장남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장남의 상속분을 크게 하고 싶다
- 귀여운 손녀와 신세를 진 며느리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싶다
- 사회공헌을 위해 금융자산의 일부를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고 싶다.

유산정리 취급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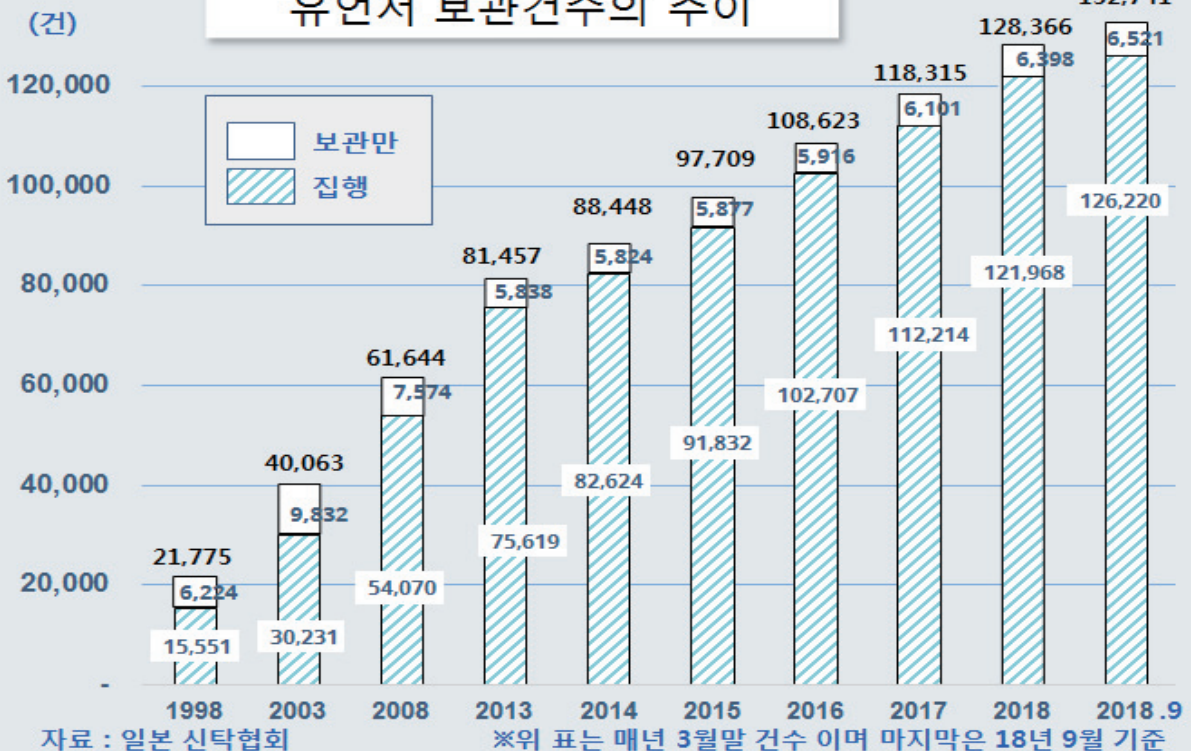
(건)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6개월분)
계약건수	2,695	4,045	4,784	5,186	5,927	3,016

※유산정리는 각 년도별 총 처리 건수이며 2018년은 6개월분에 해당한다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일본신탁 _ 유언신탁 <생각을 형상화>

유언서 보관건수의 추이



일본신탁 _ 교육자금증여신탁 <애칭:손자생각>

❖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귀하의 『생각』을 구체화합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애칭:손자생각>』은 증여하시는 분이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당사가 손자 등 증여를 받는 분으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증여를 받으시는 분은 자녀, 손자 외에 증손자도 대상이됩니다.

교육자금으로 확실히 관리	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	무료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되므로 안심입니다.	대상 : 학교 등 학교 등 이외에의 지불은 500만엔까지 (독서실,주판,수영,야구,피아노,미술학원등)	- 관리비 - 지불수수료

교육자금증여신탁의 신규수탁 상황

(건, 단위:억엔)

	2013년 9월말	2015년 9월말	2016년 9월말	2018년 9월말
계약수(누계)	40,162	141,655	170,041	200,055
신탁재산설정 금액합계(누계)	2,607	9,639	11,635	14,333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일본신탁 _ 결혼·양육지원 신탁 <애칭:연결생각>

❖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구체화합니다.

『결혼·양육지원신탁<애칭:연결생각>』은 20세이상 50세미만의 자녀 및 손자 등의 결혼·양육자금으로 증여를 하는 분으로부터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당사가 자녀,손자 등 증여를 받는분으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결혼·양육자금으로 확실히 관리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	무료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되므로 안심입니다.	대상 : 불임치료/임산부검진, 분만비/산후조리, 자녀의료비,유치원,보육시설의 보육비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예식비용,즈택임대료,보증금등의 거주비용과 이사비용 등)	- 관리비 - 지불수수료

결혼·육아지원신탁의 신규수탁 상황

(건, 단위:억엔)

	2016년 3월말	2017년 3월말	2018년 3월말	2018년 9월말
계약수(누계)	4,471	5,136	5,343	5,409
신탁재산설정 금액합계(누계)	100	132	151	159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일본신탁 _ 후견제도지원신탁 < 대비하다 >

❖ 피후견인의 남은 여생 『대비』를 지켜줍니다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재산남용 사례방지 전문직 후견인 (변호사 법무사등)의 부족으로 보충할 목적으로 대법원 법무성 신탁업계에서 제도를 구축하여 2012년 2월부터 운용을 시작한 것임

목적	필요서류	무료
신탁 계약의 체결 일시금의 교부 등의 절차가 가정법원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본인의 예금 등을 보존	-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신탁 - 신탁금은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지시서에 따라 설정된 특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피후견인에게 교부된다 - 가정법원의 지시서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교부 등의 신청이 안됨	- 연2회 신탁잔고 알림 - 신청시 수수료 무료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수탁현황

(건, 단위: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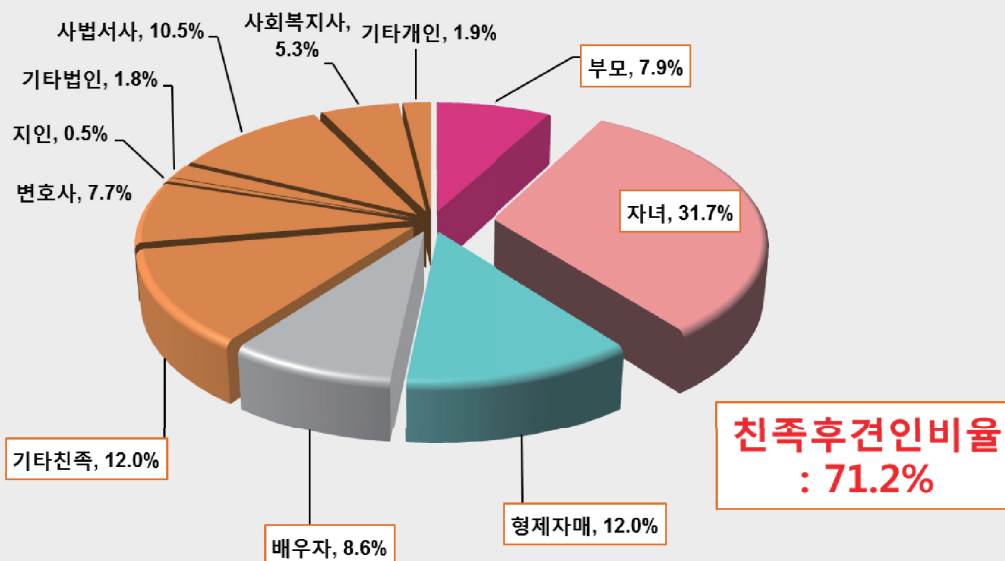
	2013년 3월말	2015년 3월말	2016년 3월말	2017년 3월말	2018년 3월말	2018년 9월말
수탁건수	174	5,188	12,918	18,528	20,927	21,389
수탁잔액	59	1,654	3,760	5,447	6,173	6.392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일본신탁 _ 일본후견인 종류 2006년

성년후견인 종류별 건수 _ 2006년 1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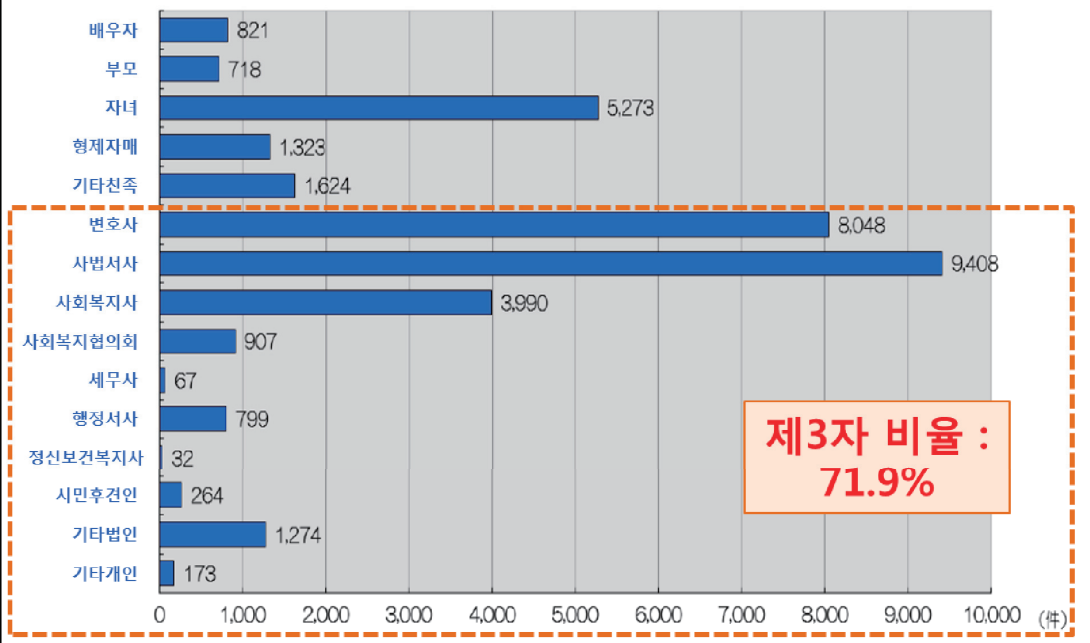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



일본신탁 _ 일본후견인 종류 2016년

성년후견인 종류별 건수 _ 2016년 1월~12월

자료 : 일본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



일본신탁 _ 한국과 일본의 라인-업 비교

신탁서비스 내용	일본	한국
유언신탁	0	x
유산정리업무	0	x
교육자금증여신탁	0	x
결혼/양육자금 증여신탁	0	x
보험신탁	0	x
부동산신탁	자회사를 통한 중개,관리	관리,처분신탁
생애증여신탁	증여플랜 제공	증여신탁
보급형 금전신탁 (최저1만원이상~)	0	0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FP Conference 2019

Contents

FP Conference2019

03_연구 결과

- 사회환경 변화
- 신탁의 특성
- 한국의 신탁활용
- 선진신탁(일본, 미국) 활용비교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 ❖ 미국의 상속법 적용 기본
: 연방법(Federal Law)가 아닌 주법(State Law)이 기본

상속 일반론

- ❖ 동산에 대한 적용 법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의 법
- ❖ 부동산에 대한 적용 법 :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법

州 법령 적용사례

- ❖ Payne v. Stalley 사건 (미시간주 변호사의 실수 – 플로리다 법령 간과)
: 미시간주 변호사의 370만불 소송에서 플로리다 주법 간과로 제소기간 도과

출처 : 김상훈, 『미국상속법』(2012), 세창출판사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 ❖ 미국의 상속법 통일화를 위한 법전
: Uniform Probate Code (통일유언검인절차법)

통일법전 추진

- ❖ 각 주법에 산재한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요소 제거한 통일법전 추구
- ❖ 1969년 최초 공포 : 포괄적인 성문화 작업의 최초 시도

UPC 범위

- ❖ 미국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무유언상속, 유언, 증여, 신탁관리, 유언검인 등)
- ❖ UPC 채택한 州 : 1969년 UPC 16개 주 → 1990년 UPC 19개 주

연구과제 _ 미국의 상속제도

- ❖ 미국의 상속집행 시스템
: Probate System (유언검인시스템)

Probate 범위

- ❖ 제1장 일반조항, 유언검인법원 / 제2장 무유언상속, 유언, 증여
- ❖ 제3장 유언검인관리 / 제4장 인격대표자 / 제5장 무능력자와 그들 재산 보호
- ❖ 제6장 비검인대상 재산의 이전 / 제7장 신탁관리 / 제8장 효력발생일과 법률폐지

Probate 기본 관점

- ❖ 단순한 유언검인 수준을 넘어 국가에 의한 상속집행절차
- ❖ 유언은 자기집행력이 없고, Probate Court에 의한 승인 후 효력 발생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 Probate Process (유언검인절차)

Probate 기능

- ❖ 유언상속 / 무유언상속 → 모두 Probate 대상
- ❖ 유언검인법원 : 수당허용, 채무변제, 세금납부, 재산분배, 관리과정 분쟁 해결

Probate 절차

1. 검인신청서 제출 → 2. 통지 → 3. 유언검인법인의 심리(Hearing)
- 4. 유언에 관한 조정 → 5. 검인의 승인과 상속재산의 처분

연구과제 _ 미국의 상속제도

❖ 무유언상속 (Intestate Succession)

일반론

- ❖ 가족구성원의 자격에 따른 고정지분 분배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혈족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
- ❖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은 상속에서 제외
(사위,며느리,처남,형수 등)
- ❖ 피상속인 사망전 상속인의 생존 (UPC : 피상속인보다 120시간 오래 생존)
- ❖ 대부분의 주에서 양자는 친부모의 자녀가 아닌 양부모의 자녀로 고려

연구과제 _ 미국의 상속제도

❖ UPC 하에서 무유언상속 (Intestate Succession)

구체적인 내용

- 배우자, 자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 생존배우자가 모든 재산 상속
- 배우자, 자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 생존배우자가 먼저 20만불 상속 후, 남은 재산의 3/4, 부모 1/4
- 배우자, 생존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 피상속인의 의붓자녀의 경우
: 생존배우자가 먼저 15만불 상속 후, 남은 재산의 1/2, 피상속인의 자녀 1/2
- 배우자, 생존배우자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의 자녀의 경우
: 생존배우자가 먼저 10만불 상속 후, 남은 재산의 1/2, 피상속인의 자녀 1/2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 UPC 하에서 유언상속 (Wills)

인증유언(Attested)

- 문서로 작성할 것 / 유언자 이름 서명 (직접 또는 지시에 의해)
- 적어도 2인 이상 증인 서명 / 증인들의 합리적 시간 내 서명
(참고) 버몬트 주 : 3명의 증인 요구, 루이지애나 주 :
증인 외 + 공증인이라는 특별형식 요구

비인증유언

- 자필유언 (Holographic Wills)
- 구술유언 (Nuncupative Wills)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 UPC 하에서 검인대상재산과 비검인대상재산

검인대상재산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 피상속인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검인절차를 피하려고 하는 현상 발생

비검인대상재산

- 조인트테넌시 (Joint Tenancy)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POD 계좌 (Payable-On-Death Accounts)
- 철회가능신탁 (Revocable Trust)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상속법)

❖ Probate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속설계방법 Trust

신탁 구조



위탁자



수탁자



사후 수익자

상속설계 활용

- 신탁 = Non-Probate Assets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Probate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생전 상속설계
- Probate 과정
주마다 다르나, 최소 9개월 ~ 수년이 소요되며, 제반 관리 비용 지출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신탁사례)

❖ 유언신탁 : 휘트니 휴스턴 유언신탁(딸 낳기 한달 전 유언장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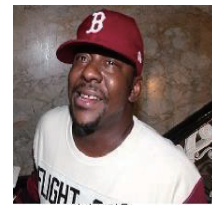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

유언집행자 : 모
수탁자 : 오빠의 부부



바비 크리스티나
(만 17세)

1차 : 21세 (2014년)
2차 : 25세 (2018년)
3차 : 30세 (2023년)



전 남편 : 바비 브라운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신탁사례)

❖ 유언대용신탁 – 스티브잡스의 생전신탁 활용



신탁(현금, 주식, 부동산 등)



배우자



자녀 1



자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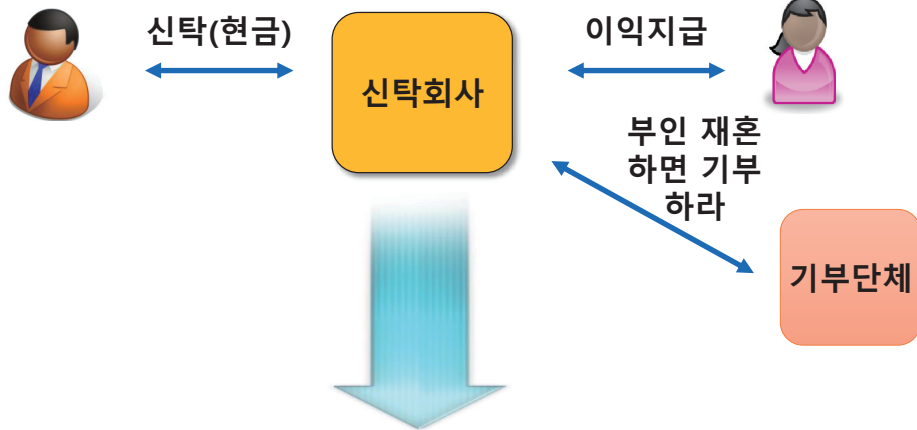
자녀 3



자녀 4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신탁사례)

❖ 매사추세츠 대법원 판례 (National Academy v. Cambridge Trust)



➤ 부인 재혼 후 지급한 모든 수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기부단체에 배상하라...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신탁법)

❖ 신탁과 포괄유언장의 결합으로 좀 더 완벽한 상속설계

신탁 설정 일반

- 기본적인 구조
위탁자 : 자연인 , 수익자 : 상속인 또는 기부기관
수탁자 : 1차 수탁자를 본인 또는 부인, 2차 수탁자를 금융기관으로

신탁재산의 보완

- 신탁과 유언장의 결합
위탁자 사고 미래 보상금 등 수탁하지 못한 재산의 관리
-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통해 사후에 신탁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

미국 _ 미국의 상속제도 (신탁법)

❖ 상속세 결정은

공제(Deductions) 및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에 의해 결정

공제항목	통합세액공제
➤ 장례비용과 유산관리 경비 ➤ 피상속인의 부채 ➤ 손상 또는 도난손실 재산 ➤ 자선단체 기부금 ➤ 주 정부 상속세 ➤ 배우자 상속공제 (marital deduction)	➤ 평생 면제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금액 - 실제 납부할 세금은 통합세액 이후 ➤ 연도별 공제한도 - 19년 \$11,400,000 - 18년 \$11,180,000 - 17년 \$5,490,000 - 16년 \$5,450,000

미국 _ 한국 VS 미국 (거주자,소재여부) 증여납세 관련

❖ 증여세 과세문제

- 미국 거주자 VS 미국 비거주자
- 한국 재산 VS 미국 재산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내용	
			한국	미국
한국 부모	미국 자녀	한국 재산	한국 재산 과세 증여자 연대납세	과세 안함
한국 부모	미국 자녀	미국 재산	증여세 과세, 단 미 국 부과시 안함	증여자 과세
미국 부모	한국 자녀	한국 재산	한국 재산 과세	증여자 과세
미국 부모	한국 자녀	미국 재산	미국 재산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자 과세
미국 부모	미국 자녀	한국 재산	한국 재산 과세	증여자 과세
한국 부모	한국 자녀	미국 재산	미국 재산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자 과세 가 능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FP Conference 2019

Contents

FP Conference2019

참조 _ 국가별 상속세 비교

참조) _ 한국 상속세의 세율구조

■ 2000.1.1 이후 상속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참조) _ 일본 상속세의 세율구조

■ 2015.1.1 이후 상속세율 구조

법정 상속분에 응 취득 금액	세율	공제액
1,000 만엔 이하	10 %	-
3,000 만엔 이하	15 %	50 만엔
5,000 만엔 이하	20 %	200 만엔
1 억엔 이하	30 %	700 만엔
2 억엔 이하	40 %	1,700 만엔
3 억엔 이하	45 %	2,700 만엔
6 억엔 이하	50 %	4,200 만엔
6 억엔	55 %	7,200 만엔

참조) _ 일본 상속세의 세율구조

■ 2015.1.1 상속세제 개정의 영향

			구제도(~2014년12월)	신제도(2015년1월~)
①기초 공제액 <인하>	시산식		5,000만엔+1,000만엔× 법정 상속인수	3,000만엔+600만엔 × 법정 상 속인수
	예 시	1차 상속시 (상속인 =배우자+자녀2명)	8,000만엔	 4,800만엔
		2차 상속시 (상속인 =자녀2명)	7,000만엔	 4,200만엔
②세율구조 <누진성 강화>			6단계, 최고세율 50% (각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액 3억엔 초과)	8단계, 최고세율 55% (6억엔 초 과) 2억엔~3억엔과 6억엔이상 인 층에서 세율인상

- 2016년의 피상속인수(사망자수)는 130.8만명, 그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0.6만명
- 2014년(법 개정전)의 피상속인수는 127.3만명, 과세 대상은 5.6만명
→ 사망자수는 약간 증가했을 뿐이지만, 상속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2배로 증가
- 과세대상비율(과세대상피상속인수 ÷ 피상속인수)은 8.1%, 법개정 전 4.4%에서 크게 증가

참조) _ 미국 상속 · 증여 공제한도

Period	Basic Exclusion Amount
2002 through 2010	\$1,000,000
2011	\$5,000,000
2012	\$5,120,000
2013	\$5,250,000
2014	\$5,340,000
2015	\$5,430,000
2016	\$5,450,000
2017	\$5,490,000
2018	\$11,180,000
2019	\$11,400,000

참조) _ 미국의 유산세&증여세

Table A—Unified Rate Schedule

Column A Taxable amount over	Column B Taxable amount not over	Column C Tax on amount in column A	Column D Rate of tax on excess over amount in column A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	345,800	40%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FP Conference 2019

Contents

FP Conference 2019

01_연구 개요

02_연구 방법

03_연구 결과

- 사회환경 변화
- 신탁의 특성
- 한국의 신탁활용
- 선진신탁(미국,일본) 활용비교

04_연구의 시사점

4. 연구의 시사점

■ 4-1 시사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관리와 승계 수단으로써의 신탁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탁은 단순히 금전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승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으로 다양한 금융수요를 담아 내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신탁계약을 통해 다양한 자산과 니즈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승계플랜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일본의 경우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금융의 만물상자와도 같은 신탁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4. 연구의 시사점

■ 4-2 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01

신탁업 분류 재편

- 재산별 → 기능별(운용형, 관리형) → 새로운 공급자 출현
- 재신탁 / 신탁대리점 제도 도입

02

신탁재산 확대 및 운용방식 변경

- 열거주의 방식 → 포괄주의 방식 →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
- 단독운용 → 장기관리 목적자금 합동운용 허용
ex) 셀프장례, 교육·양육비



4. 연구의 시사점

■ 4-2 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03

신탁업법 제정

-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장기자산관리 규정
: 상속 및 노후자산관리 등에 맞는 관리체계 정비

04

제도개선

- 신탁의 비대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
- 신탁경험확대를 위한 홍보제도 개선



4. 연구의 시사점

■ 4-2 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05

세제 정비 및 세제 혜택

- 신탁활용에 적합한 세제 정비
- 치매대비 관리목적의 신탁에 일정한 세제한도 부여
- 기업승계 관련제도 개선 : ex)세제혜택 확대, 의결권제도

06

신탁의 장애 및 후견분야 신탁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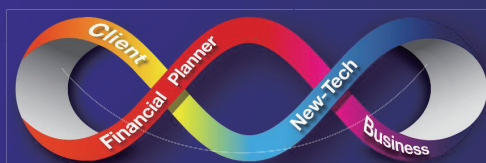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피후견인의 재산 → 신탁 의무화



FP Conference 2019

New Thinking
New Future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KFPA (사)한국FP협회
Korea Financial Planner Association

포스터 발표

펀드 보유패턴의 변화: 2013년과 2018년 비교

구지연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차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홍은경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펀드는 전문적인 집합운용, 분산투자, 상대적 안전성, 시간과 거래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의 선택 가능성, 투자자보호 장치 등의 이유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러나 펀드의 상품구조와 운용방식이 다양, 복잡해지고,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펀드투자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3년과 2018년 펀드투자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펀드투자자의 특성, 보유펀드의 유형과 특성, 투자액, 펀드이해도 등 펀드 보유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에는 조사대상자(n=2,530) 중 39.0%(n=986)가 펀드투자를 하고, 2018년에는 조사대상자(n=2,530) 중 33.8%(n=856)가 펀드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펀드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펀드투자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8년 모두 남녀의 비율이 50% 정도였고, 평균 연령은 2013년 44.2세, 2018년 44.7세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2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2013년과 2018년 모두 사무직, 전문관리직, 자영업의 순이었고, 교육수준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고졸이하의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

둘째, 2013년 펀드투자자의 가계재무상태를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소비자물가지수 2018년=100.0, 2013=93.871)하여 살펴본 결과, 월평균가계소득 645만원, 총자산 60,150만원, 금융자산 13,456만원, 부동산자산 44,307만원, 부채 4,82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펀드투자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689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실질가치로 6.8% 증가한 반면, 총자산(54,100만원), 금융자산(11,568만원), 부동산자산(40,546만원)은 2013년 보다 감소했고, 총부채(5,338만원)는 2013년 보다 증가했다.

셋째, 펀드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개수는 2013년 4.13개에서 2018년 3.95개로 감소하였다. 투자금액이 큰 5개 펀드를 기준으로 보유펀드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n=3,133)에는 주식형 31.2%, 혼합형 26.9%, 채권형 14.4%, MMF 11.8%, 파생상품 6.6%, 부동산 5.8%의 순이었고, 2018년(n=1,769)에는 주식형 33.2%, 혼합형 27.8%, 채권형 13.9%, MMF 10.5%, 부동산 6.4%, 파생상품 6.2%의 순으로 나타나, 주식형, 혼합형, 부동산 펀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방법의 경우, 2013년에는 거치식 30.9%, 적립식 46.3%, 임의식 22.8%, 2018년에는 거치식 28.4%, 적립식 47.6%, 임의식 24.0%으로, 거치식 펀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투자지역은 2013년 국내 77.5%, 해외 22.5%, 2018년 국내 75.4%, 해외 24.6%로 해외투자펀드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평균보유기간은 2013년 28개월에서 2018년 40개월로 크게 증가하여, 환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2013년에 보유한 펀드의 투자총액은 평균 4,971만원이었고, 이를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5,295만원이다. 2018년의 펀드투자총액은 5,031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실질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조사에서는 일반펀드와 일반펀드 외 펀드(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 등 세제혜택 또는 가입의무기간이 있는 펀드)를 구분하여 조사했는데, 일반펀드의 투자총액은 평균 3,812만원, 일반펀드 외 펀드의 투자총액은 평균 1,219만원이었다. 금융자산 보유액의 감소로 인해 금융자산 중 펀드투자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은 39.4%에서 2018년은 43.5%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투자원금에 비해 현재평가총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42.3%에서 2018년 37.2%로 감소한 반면, 투자원금에 비해 현재평가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7.4%에서 2018년 35.5%로 증가함으로써, 지난 5년 간 펀드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펀드투자자의 81.8%는 앞으로도 펀드투자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3년(79.8%)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 보다 투자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8년(17.8%)이 2013년(16%) 보다 높았다. 이는 향후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실에 대한 보상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여섯째, 펀드의 운용원리, 특성과 관련된 11개 진술문을 제시하고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이해도 점수(0점~11점)를 측정한 결과, 2018년의 이해도 점수(6.85점)가 2013년(7.1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는 펀드투자자의 비중, 펀드보유개수, 펀드투자총액이 감소하였고, 투자원금에 비해 현재평가액이 감소한 투자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펀드투자가 침체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자의 대다수가 펀드투자를 계속할 의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대체형 투자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과신성향, 업무이해력이 금융소비자보호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층적성격모델을 중심으로-

김지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8년 키코(KIKO)사태,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채 및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2002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효용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2006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고, 2015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감독시스템이 지난 15여 년 동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및 인력의 전문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성향 및 업무이해력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인식과 행동을 증진시키고 금융소비자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층적 성격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8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A 금융투자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총 2,26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기과신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p < .001$), 업무이해력은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p < .001$),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은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자기과신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정의 영향력이 있고($p < .001$), 업무이해력은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를 통해 자기과신성향, 업무이해력,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자기과신성향과 업무이해력이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H2$)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자기과신성향, 업무이해력,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H4, H5$)라는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업무이해력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컸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자 대상의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실무적, 교육적 측면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보험시장에서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 연구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백현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손지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보험상품은 가계 재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마다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이용 규모는 늘어가고 있다. 보험상품은 장기성, 복잡성 등의 상품 자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 교섭력차이 그리고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구조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 왔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동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은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금융 민원 중 61.9%를 차지하고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24,7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이나 불평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 수준이 만족스럽고 충분한지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자가 아닌 소비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보험시장에서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대규모 소비자조사인 「2017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정보비대칭, 교섭력차이 그리고 이해상충 등의 거래구조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고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 각각의 평균점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10점 만점에 생명보험은 평균 8.19점($SD=1.41$), 손해보험은 평균 8.25점($SD=1.3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래구조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에 미치는 영향 관련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에서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p<.001$),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p<.001$)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p<.001$)이 소비자보호제도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359$),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268$)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204$)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352$),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325$)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수록($\beta=-.146$)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자가 아닌 소비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보험시장에서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거래구조 문제 중 정보비대칭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소비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유학생의 의무가입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아름 (충북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신재호 (충북대 소비자학과 석박통합과정)

장경형 (충북대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임기억 (충북대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165명으로 전년대비 1만 7,960명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늘어나는 유학생 숫자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 중 하나는 국내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유학생 질병 상해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 보험(혹은 질병 상해보험)’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써 국내 유학생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용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 중 대표적인 유학생 집단인 중국유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가입한 보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험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4점 평균에 2.40점으로 모르는 편으로 나타났고, 보장내용에 대한 인지도도 4점 평균에 2.34점으로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험청구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4점 평균에 2.19점으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인지도도 2.08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79.0%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약관 이해’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을 청구 경험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서’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니다’가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험증권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59.7%가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학생 보험의 정보전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54.8%가 학교상담이 가장 좋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유학생들이 보험보장 내용 등과 같은 정보제공에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1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생각하여 제도 시행 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자비율이 노후준비 상황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장경영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상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노후준비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많은 가계가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금액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노후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재무관리 분야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 연령대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재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최현자 외, 2003; 양세정 외, 2013). 또 재무비율 지표를 실증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적 건전성을 진단하는 연구(이희숙 외, 2004)와 재무비율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김민정·최현자, 2007)도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 펀드투자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무설계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 종류의 투자비율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순자산 대비 투자비율, 2)총자산 대비 투자비율, 3)연소득 대비 투자비율 지표에 관심을 두고, 이들 세 개 지표를 노후준비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 수준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펀드투자자조사에는 응답자가 가구주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다. 본 연구는 가계 단위의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구주 또는 그에 준하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펀드투자자조사의 문항 중 '귀택에서 금융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본인이 주로 한다'(1,957명)와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상의해서 한다'(461명)라고 응답한 2,418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수는 노후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데, 펀드투자자조사의 문항 중 '노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월 평균 생활비의 몇 % 정도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나?'를 사용하였다. 응답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52.5%, 중앙값 50%였다. 독립변수는 순자산 대비 투자비율, 총자산 대비 투자비율, 연 소득 대비 투자비율 등 세 가지 투자비율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산 대비 투자비율은 평균 4.6%였고 중앙값은 0.5%였다. 총자산 대비 투자비율은 평균 4.2%였고 중앙값은 0.46%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2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소득 대비 투자비율은 평균 41.6%였고, 중앙값은 2.1%였다. 둘째, 세 가지 투자비율의 수준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노후준비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세 가지 투자비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 중 나이, 부동산자산, 소득 등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선되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총자산 대비 투자비율이 은퇴/노후준비 적정성이나 재무적 복지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Hanna & Kim(2016)의 연구, Tenney & Kalenkoski(2019), 김민정·최현자(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향후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위험수용성향과 재무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신용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신용관리역량 차이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곽민주(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김민정(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신용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오늘날 신용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보유함으로써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이나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금융지원제도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누구보다 신용교육을 통한 신용관리가 매우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최근 5년 이내에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222명, 44.4%)와 신용교육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278명, 55.6%)로 구분하여 신용관리역량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교차검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교육 특성을 살펴보면, 신용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82.0%)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신용회복지원제도’(55.0%), ‘부채관리’(39.6%), ‘합리적 소비’(36.0%), ‘신용등급관리’(30.6%) 등의 순이었고, 주로 ‘공공기관’(64.0%)에서 ‘강의식’(51.4%)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및 부채관리를 하는데 신용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3.45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둘째, 신용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신용관리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보다 신용에 더욱 허용적인 태도(‘나는 매달 조금씩 갚기만 하면, 부채청산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용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신용관리지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라는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보다 신용관리지식 수준이 다소 높았다.

넷째, 신용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신용관리기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금융비용 차이를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에 맞추어 사용여부나 사용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는 신용을 사용할 때 원리금을 계산해 보고

이자율과 기간, 나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내 신용등급과 신용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에서 모두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보다 신용관리기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용교육경험이 신용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신용관리태도는 신용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신용관리기능은 신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저신용자로서 신용관리를 위해 신용교육이 매우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1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신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신용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용교육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교육을 받지 않은 금융소비자보다 신용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용관리지식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볼 때, 신용교육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소비자의 신용관리역량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용관리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